

88근로자 건강진단 실내안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88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적용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건강진단 대상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 사업 서어비스업종
 - 노무 및 경비인력 공급업
 - 기계 및 장비임대업
-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 영화제작·배급 및 상영업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 골프장 운영업
 - 경마장 운영업
 - 유원지 운영업
 - 수선업
 - 세탁 및 염색업
 - 사진처리업
 - 의료보건 및 수의서어비스업

* 위 업종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건강진단대상

- 1)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4 알킬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 허용농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부서 근로자 전원
- 2)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 수준이 평균 85 dB(A) 이상인 경우와 분진의 측정치가 허용기준의 90%이상인 경우 해

당부서 근로자 전원

- 3) 상기 1 및 2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학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이상기압, 진동, 유해광선에exposed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의 근무경력, 작업조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과 협의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진단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건강진단(1차)

- 30세미만자 : 5,230 원
- 30세이상자 : 8,140 원

나. 특수건강진단

항목별 수수가 각각 다르므로 관할지방노동판서나 특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시일자

귀사는 1988. 10월 1일부터 1988. 10월 31일까지

이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실시의료기관

반드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질병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 하여야 합니다.

- 가. 판정내용 및 사후관리기준

판정 등급	판정 내용	사후 관리 기준
A	○ 건강자	○ 사후관리 필요없음
B	○ 경미한 결합이 있는 건강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치하고 의사의 소견이 없을 경우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
C	○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	○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예방조치하고 의사의 소견이 없을 경우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
D ₁	○ 직업성 질병에 이환된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른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
D ₂	○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직, 근로시간단축,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사의 소견이 없을 경우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

나. 일반 질병자 조치

1) 결 학

타 근로자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개방성 결핵 환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취업을 금지시키는 동시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투약등 치료를 받도록 하며 재진결과 결핵군이 배설되지 않음(비활동성)이 확인되었을 때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합니다.

2) 기타 일반질병

일반질병자에 대하여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능한 한 전문병원을 알선하여 근무중 치료를 시키는 등의 제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결핵을 제외한 법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다. 불이익 처분금지

1) 건강이상자

건강진단실시결과 발견된 건강 이상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조치 이외의 건강 결함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여타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B형 간염보균자

B형 간염의 전염경로는 공기를 매체로 하는 결핵 등의 전염병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 의하여 특별히 취업을 금지하는 일부직종(식품의 조리·가공등)을 제외하고는 휴직등 불이익 조치를 금하여야 합니다.

6. 유의사항

- 가. 일반건강진단의 1차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R로 판정된자는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규정(노동부 예규 제149호) 제6조별표 제5-2호 2차 건강진단개인표에 명시된 항목의 항목내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5일이내에 반드시 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동개인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의사가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나. 특수건강진단의 1차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R로 판정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4조 제2항별표5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2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 건강진단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시기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기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30세이상근로자는 지. 오. 티, 지. 피. 티검사를 위해 모두 채혈하여야 하므로사업장 출장검진을 지양하고 한가한 시간에 근로자가 인근지정 의료기관을 방문, 검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금지사항

- 가. 건강진단수거를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수가(위 제2항의 수가)이하로 감액하는 경우 부실검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덤핑을 유도하는 등 부실검진 조장행위를 금합니다. (적발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지정취소 조치되고 해당사업장은 수가차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수시감독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나. 의사 1인당 1일 근로자 200명이상의 검진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사, 간호원, 병리기사, X-선 촬영기사등 검진 참여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 무자격자가 발견될시 즉시 관할 사무소에 신고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검진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포함하므로 특수검진 대상자에 대한 일반검진을 별도로 실시하여 근로자 1인에 대하여 2개의료기관에서 일반과 특수검진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중에서 검진기관 1개를 선정하여 검진하여야 하며 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의 검진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벌 칙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진 인원 누락, 부실검진의 경우 재검진은 물론 관계 법규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 보고서 제출

건강진단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1부
- 나. 엑스선 사진 판독소견서 1부
- 다.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1부
- 라. 직업병 유소견자의 건강진단개인표
(사본) 1부

10. 작업환경 측정

가. 측정주기

작업환경측정은 건강진단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작업부서	측정주기
분진발생부서	6월 1회
소음발생부서	"
유기용제취급부서	"
특정화학물질취급부서	"
연취급부서	1년 1회
산소결핍장소	매작업 시작전

나. 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방법은 노동부고시 제86-46호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측정자의 자격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진단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

라. 측정결과의 활용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자가 노동부고시 제86-46호(제16조)에 의거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 측정자의 개선의견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86-46조 제17조 참조)

마. 벌 칙

작업환경측정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88년 월 일

지방노동(청, 사무소)장